



서울고등법원

제 1 행정부

판 결

사 건 2012누1807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 A
피고, 피항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구합44365 판결
변 론 종 결 2012. 11. 13.
판 결 선 고 2012. 12. 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가 2011. 11. 7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 제2항, 「민사소송법」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고의영 _____

 판사 최한순 _____

 판사 이순형 _____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7

[별 지]

목 록

(목 록 삭제)